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8-626
----------	-------

제출년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정이유

- 2021년 상반기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부도 뱃길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사업위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5·6·7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선착장 등의 도선사업 목적 외 이용 (안 제9조)
-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1·12조)

제정조례안 :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3

사전예고결과(의견 없음) : 붙임 4

- 입법예고 : 2021. 4. 16 ~ 4. 26.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5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 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 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도선사업” 이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의 선착장(부잔교, 도교)과 그 일원의 부대시설물을 이용하여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부대시설물” 이란 매표소, 승객대기실, 주차장, 화장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선사업의 위치 및 노선) 도선사업의 위치와 노선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운영 · 관리 등)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 관리한다. 다만, 도선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 ·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도선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별표 3의 승선권을 발매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 ③ 도선장을 목적 외로 사용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나. 출항 2시간 전까지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 다. 과오납한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 출항 이후 당일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가. 보호자와 동행하는 만 2세 이하 유아
-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 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바. 초, 중, 고등학생 등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3. 100분의 20 감면

- 가.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
- 나. 15명 이상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선사업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선착장 등의 도선사업 목적 외 이용) ① 시장은 응급환자 이송과 같은 긴급상황 및 해양레저교육, 단속 등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선박에 한하여 선착장 및 부대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관내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한하여 해당 민간 레저선박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선착장 및 부대시설물을 별표 4에 따라 유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해양수산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담당·팀장 직위·성명	해양레저팀장 이지선
	담당자 성명·전화	황기연 (행정 3695)

[별표 1]

도선장의 위치와 노선

도 선 장 명	위 치	노 선 명	운 항 구 간
안산천 하구 도선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804 전면 해상		
반달섬 도선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63-3 전면 해상	안산 대부도 뱃길	총 21km 안산천 하구 ~ 반달섬~ 구)방아머리
구)방아머리 도선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099 전면 해상		

[별표 2]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 이용료

가. 이용요금

(단위: 원)

구 분	소 인 (1명 기준)	대인 (1명 기준)	장 비 (1개 기준)	비 고
이용료 (왕복요금)	10,000	20,000	5,000	

※ 감면 전 기준요금

나. 이용자 구분

- 1) “소인” 이란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 2) “대인” 이란 초, 중, 고등학생 및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3) “장비”란 자전거, 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별표 3]

안산 대부도 뱃길 이용 승선권

[승선권]

승 선 권 NO - 이용대상: 안산시장	영 수 증 NO - 이용대상: 안산시장
--------------------------------	--------------------------------

[별표 4]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장 목적 외 사용 시 이용료

가. 이용요금

(단위: 원)

구분	사용구분	규격	이용료
계류장 시설	일시사용 (1척 1일)	선박의 길이 5m 미만 선박의 길이 5m 이상	5,000 7,000
	상시사용 (1척 1월)	선박의 길이 5m 미만 선박의 길이 5m 이상	70,000 100,000
	[비고] 1. 일시사용이란 월 15일 이내, 상시사용은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 월로 본다. 2. 길이 책정은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를 적용한다.		

나. 이용사항

- 1) 선착장(부잔교와 도교)에 한함.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물 이용 시의 요금은 감면없음.
- 2)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이란 기업체에서 만든 선박 및 선박부속의 시험 등을 위해 계류하는 목적의 사업에 한정한다.
- 3) “해당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626
------------	-------

제안년월일 : 2021년 6월 18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회

□ 수정이유

- 대부도 뱃길 매표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이용요금 체계를 수정함.

□ 주요골자

- “초, 중, 고등학생 등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을
“관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수정
(안 제7조제1항제2호바목)
-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 삭제
(안 제7조제1항제3호가목)
- “미취학 아동” 을 “아동”으로 수정 (별지2)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관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안 제7조제1항제3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한다.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 이용료

가. 이용요금

(단위: 원)

구 분	소 인 (1명 기준)	대인 (1명 기준)	장 비 (1개 기준)	비 고
이용료 (왕복요금)	10,000	20,000	5,000	

※ 감면 전 기준요금

나. 이용자 구분

- 1) “소인” 이란 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 2) “대인” 이란 초, 중, 고등학생 및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3) “장비” 란 자전거, 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 ----- ----- -----.																				
1. (생 략)	1. (원안과 같음)																				
2. 100분의 50 감면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원안과 같음)																				
바. 초, 중, 고등학생 등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바. 관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3. 100분의 20 감면	3. -----																				
가.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	<삭 제>																				
나. (생 략)	가. (원안 나목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원안과 같음)																				
[별표 2]	[별표 2]																				
안산 대부도 펫길 도선 이용료 가. 이용료 금 (단위: 원)	안산 대부도 펫길 도선 이용료 가. 이용료 금 (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 인 (1명 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인 (1명 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장 비 (1개 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리 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 (월별요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small>※ 같은 날 기준요금</small>	구 분	소 인 (1명 기준)	대인 (1명 기준)	장 비 (1개 기준)	리 그	이용료 (월별요금)	10,000	20,000	5,0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 인 (1명 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인 (1명 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장 비 (1개 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리 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 (월별요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small>※ 같은 날 기준요금</small>	구 분	소 인 (1명 기준)	대인 (1명 기준)	장 비 (1개 기준)	리 그	이용료 (월별요금)	10,000	20,000	5,000	
구 분	소 인 (1명 기준)	대인 (1명 기준)	장 비 (1개 기준)	리 그																	
이용료 (월별요금)	10,000	20,000	5,000																		
구 분	소 인 (1명 기준)	대인 (1명 기준)	장 비 (1개 기준)	리 그																	
이용료 (월별요금)	10,000	20,000	5,000																		
나. 이용자 구분 1) “소인” 이란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2) “대인” 이란 초, 중, 고등학생 및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장비”란 자전거, 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나. 이용자 구분 1) “소인” 이란 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대인” 이란 초, 중, 고등학생 및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장비”란 자전거, 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